

第50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3月8日(金) 午前11時

議事日程

1. 日本의 獨島領有權主張妄言에 대한 糾彈決議文(案)採擇의件
2.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城北區民願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城北區區民의 날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城北區再活用品販賣資金管理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城北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의 議政活動費等費用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日本의 獨島領有權主張妄言에 대한 糾彈決議文(案)採擇의件(運營委員會 提案) 2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4. 서울特別市城北區民願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5. 서울特別市城北區區民의 날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6.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面
 7. 서울特別市城北區再活用品販賣資金管理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面
 8. 서울特別市城北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4面
 9.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의 議政活動費等費用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6面
- (金光植議員外8人發議)

(11時00分 開議)

○議長 柳成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姜丙燮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방언에 대한규탄결의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광식의원과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네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시민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성북구 관내 주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도시정비국장 및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日本의獨島領有權主張妄言에대한糾彈決議文(案)採擇의件(運營委員會 提案)

(11時02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독도영유권망언에대한규탄결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俞鎮武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委員長 俞鎮武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운영위원회 俞鎮武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뿐만 아니라 50만 성북구민, 더 나아가 전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일본국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발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차후 이러한 망언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문을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 채택하여 50만 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

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城北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城北區民願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城北區區民의날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1時09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건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徐化錫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委員會委員長 徐化錫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0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행정위원회 徐化錫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權赫驥議員 의석에서—네)

○議長 柳成烈 權赫驥議員님 나오세요.

○權赫驥議員 공무원중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을 위한 생리휴가를 준다면은 하루가지고 될 수 있는지, 생리휴가라는 것은 여성이면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3일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루로 정한 것은 노동법 문제고 기왕 줄바에는 3일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成烈 權赫驥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赫驥議員 의석에서-토론할 수 있죠.)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安敦洙의원님 나오십시오.

○安敦洙議員 安敦洙의원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이전과 관련해서 구성을 5인에서 7인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토론하는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5인으로 했을 때 참석이 부실해서 7인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꼭 부실한 위원회 선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7인도 어떻게 보면 부실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위원회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해서 효율성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議長 柳成烈 역시 安敦洙議員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金順權의원님.

○金順權議員 지역개발위원회 소속 金順權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의 날을 양력 날짜로 해서 5월 7일로 제정한 것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법으로써 지역적인 어떤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날짜를 5월 7일로 정하고 그 5월 7일 행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성북구민들의 동기유발과 또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선잠제와 연계시켜가지고 5월 7일로 잡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지방자치제뿐만 아니라 더욱더 한편으로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21세기 사회를 일반적으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사회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심사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엘리트중심문화도 중요하지마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문

화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이번부터라도 우리 성북구민의 날 자체를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할 수 있고 문화의 이벤트, 이것이 곧 서울시 전체적으로 관광사업 전략으로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행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成烈 예, 金順權의원님도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城北區再活用品販賣資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8. 서울特別市城北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1時21分)

○議長 柳成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시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權赫驥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福祉委員會委員長 權赫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위원장 權赫驥입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의중 저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시민복지위원회 權赫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徐化錫의원님.

○徐化錫議員 먼저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게 30%를 지급하기로 한건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50%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30% 지급하기로 한 개정안이 불과 한 3개월 밖에 되지 않은걸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에 갑작스럽게 다시 50%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중에 페스치로폴이라는 말입니까? 페스치로

폴입니까? 우리 복지위원장님, 페스치로폴입니까? 페스치로폴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해서 30/100을 지급해오다가 불과 몇개월 되지도 않은 조례안이 50%로 바뀌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조례안이라는 것은 그래도 수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급작스레 바뀌어야 될 사항이냐, 그렇게 필요 불가한 사항이 발생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成烈 徐化錫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李承魯의원님.

(○李承魯議員 의석에서—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李承魯議員 안녕하세요. 지역개발위원회 李承魯의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 운용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60% 그 다음에 구청에서 10%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분리수거 종사자에게 30% 이렇게 배당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종사원들에게 50%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즉 다시말해서 동사무소 지분을 20%를 떼주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금으로 10%으로 떼는 것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공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 돌아가는 기금이 궁극적으로는 동 주민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지겠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도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을 명시하시고 기금운용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북구의 재활용품 수집의 양이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할 장소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재활용품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장려금 지급 인상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재활용품 보관할 장소의 대

책은 충분히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柳成烈 李承魯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張壽吉 국장님.

(○權赫驥議員 의석에서—저한테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죠.

(○權赫驥議員 의석에서—아니죠.)

그러면 나오세요.

(○權赫驥議員 의석에서—그리고 미비하면 국장님이 나오시면 되겠죠.)

예.

○權赫驥議員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더 추가로 듣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1996년 3월 8일입니다. 이 재활용 판매대금기금 조례안은 1994년 12월에 1대 의원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조례안에 30% 범위내에서 미화원한테 격려금으로 주게끔 조례안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94년 12월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구요. 그다음 재활용품 판매액은 판매 총 금액에서 10%는 구청에 10%를 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판매대금 총금액에서 10% 다음 판매대금 90% 중 100%에서 30%를 환경미화원한테 격려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미화원개개인의 온라인 통장에 들어가지 않고 일괄, 어느 동 예를 듭니다. 일괄 한 사람이 수령해서 식사비 제공을 한다든가 파티, 단합대회, 또 나눠준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얼마가 되든간에 각자 미화원 통장에 넣기로 해달라고 구청에 어제 부탁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재활용수집하는데, 값이 비싼 것은 좋은 것이고 좋지 못한 것은 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열심히 화요일날 금요일날 내놓고 보면 미화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거를 안해

간 부분을 미화원들이 수거를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다보니까 판매액수도 줄어들고 미화원들의 사기진작도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돈독을 위해서 판매액의 50%를 주고 열심히 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판매대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마대 푸대를 사고 장갑을 사주는 겁니다. 한 동네 예를 들면 재활용품 홍보용으로 각 집에 문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패 달아주면서 밑에다 재활용 홍보를 했습니다. 또 어느동에는 휴지를 사서 각 집집마다 준 동도 있고요, 그래서 미화원들 사기활성화를 위해서 30%에서 50%를 주고 청소를 잘했으면 좋게다 하는 그런 뜻에서 자꾸, 통장관리는 각 동 동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돈을 관리하면서 동에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 유지분들하고 협의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미화원들이 가장 고생하니까 복지 차원 문제 아닌 활성화 차원에서 몇 푼 안되는 돈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權赫驥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俞鎮武議員 의석에서—답변 안나왔어요)

李承魯의원님 답변이 미흡하십니까?

(「다 안나왔어요」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張壽吉 국장님 나오셔서 못다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壽吉 權赫驥위원장님께서 그 30%에 대해서 나무나도 잘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李承魯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주민에게 재활용수집 판매대금 중에서 60%를 배부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럼에 따라서 판매대금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있다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량이 엄청난데 비해서 보관장소에 대한

대책 이렇게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俞辰武議員 의석에서—30%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느 부분에서 빼서 50%를 했나)

예, 30%는 전체 100%중에서 저희들에게 10% 그 다음에 그것이 50% 그렇게 되면 60%되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배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누차 회의때도 지시를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에 대해서 실지 돌아가는 액수가 고르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현재 각종 실태를 볼때 통별로 나눠주는 그런 동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나눠주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판매대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느냐면 재활용 비닐봉투를 나눠주면서 제일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몇 개 동은 재생화장지라든지 비누 세트, 아까 말씀드린 문패 제작, 그 다음에 홍보 부채를 제작 분배한 그런 동도 있고, 저금통,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분배한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동이 있는데, 실지 이것들이 분배과정중에서 전 동에 있는 주민에게 고루 나눠주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李承魯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명심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는 그러한 품목은 동장이 결정하되, 분배 방법은 통별로 분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절대 누락되는 집이 없도록 이와같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의 양은 재활용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수집의 양이 각동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공지 또는 적환장 등등에 재활용품을 많이 쌓아놓음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미관상도 좋지않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청소차고지를 천평을 확보한 지역에 차량들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던 청소차고지를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또 월곡동 주변에 지금 살고 있는 땅들을 재활용품 수집장소로 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저희들이 보관장소로 확대하도록 이와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재활용품이 수집이 되면 즉시 구로 저희들이 확보된 장소로 이전하도록 이와같이 하고 평소에는 칸막이 등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承魯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張壽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청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等費用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光植議員外8人發議)

(11時47分)

○議長 柳成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俞鎮武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委員長 俞鎮武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俞鎮武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
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괄질의, 일괄답
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제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토론하실 의원님 제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 그리고 심장석부구청장님 그리
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
다.

(11時52分 閉會)

○出席議員 39人

洪 性 溱	朴 景 錫	任 泰 根
申 宗 鉉	文 京 周	金 東 殷
許 東 翼	金 順 權	宋 夏 星
柳 興 先	吳 榮 作	尹 晚 丸
權 赫 騏	金 光 植	安 敦 洙
辛 在 福	李 大 一	高 允 根
徐 榮 振	徐 化 錫	金 甲 濟
俞 鎮 武	金 鈴 基	金 振 權
李 鍊 垌	崔 東 煥	柳 成 烈
羅 光 洙	趙 基 燦	丘 在 永
尹 弘 老	李 龍 燮	金 珉 奭

安 傑 珞	金 壽 榮	崔 桂 洛
李 承 魯	鄭 昌 萬	金 南 孝

○缺席委員 3人

崔 哲 模	金 榮 植	朴 時 俊
-------	-------	-------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專 門 委 員	崔 石 根

○參席公務員

副 區 廳 長	沈 長 錫
總 務 局 長	白 亨 奭
市 民 局 長	張 壽 吉
民 願 擔 當 室 長	李 鍾 淳
總 務 課 長	田 喜 久
衛 生 課 長	高 鎔 銀
清 掃 課 長	安 明 佑